

1. 개정이유

교정시설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에 대한 교정제복 착용 근거를 마련하고, 기동순찰팀의 직무수행 특성을 고려한 베레모 도입 및 근무모와 사복착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며, 신설 및 개선되는 교정제복의 제작 양식 개정으로 현행 제복운영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교정시설 아닌 곳에서 교정제복을 착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「군인복제령」, 「경찰복제에 관한 규칙」, 「소방공무원 복제규칙」에서는 군인, 경찰, 소방공무원의 제복 착용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, 법무부 교정본부와 각 지방교정청에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은 제복 착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타 조직 복제 규정과 체계를 맞추고, 교정시설이라는 장소적 제한 규정에 관계없이 제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개정

나. 기동순찰팀(CRPT) 베레모 도입 및 근무모·넥타이 등 착용관련 세부사항 규정

- 1) 헬멧을 착용하는 기동순찰팀의 직무수행 특성을 고려하여 팔각기 동모를 폐지하고, 넓은 시야 확보와 휴대가 편리한 베레모 도입
- 2) 근무모와 근무복용 넥타이·넥타이핀 착용관련 세부사항을 정함

다. 업무 특성을 고려한 사복착용에 대한 세부사항 추가

교정공무원의 업무 특성상 사복착용이 필요한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

정 보완함

라. 신설 및 개선되는 교정제복의 제작 양식 개정

방한점퍼·업무용 복장 신설과 정복 수장, 개선되는 정모·계급장·기동
순찰팀 및 호송팀 복장·기능성여름셔츠의 제작 양식 개정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중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

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교도소·구치소 및 그 지소(이하 “교정시설”이라 한다)에서 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법무부장관 또는 교정시설의 장(이하 “소장””을 “법무부장관, 지방교정청장, 교도소·구치소 그 지소의 장(이하 “법무부장관등””으로 한다.

제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베레모

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기동복(겨울기동복, 여름기동복, 기동순찰 반팔 및 긴팔셔츠, 기동순찰 하의, 기동순찰 점퍼)

7. 호송 근무복(여름용 상의, 겨울용 상의, 점퍼)

8. 방한점퍼

제7조제2항 중 “법무부장관 또는 소장”을 “법무부장관등”으로 한다.

제9조 중 “셔츠·넥타이·넥타이핀·단추·벨트·장갑·이름표 및 방한 귀덮개”를 “셔츠·넥타이·넥타이핀·단추·벨트·장갑·이름표·

방한 귀덮개·색안경·손전등·목덮개”로 한다.

제10조제2항 단서 중 “소장”을 “법무부장관등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2항제3호 중 “법무부장관이 지정”을 “법무부장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2항제5호 중 “법무부장관이 지정할 때와 소장”을 “법무부장관등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1항제5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“법무부장관이 지정할 때와 소장”을 “법무부장관등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근무화

8. 넥타이(근무장)와 넥타이핀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 점검, 순시, 훈련, 출정, 주요행사 참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착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, 제1항제8호의 경우 법무부장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제외하고 착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소장”을 “법무부장관등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교정시설”을 “교도소·구치소 및 그 지소(이하 “교정시설”이라 한다)의”로 하며, 같은 항 제6호 중 “소장”을 “법무부장관등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소장”을 “법무부장관등”으로 한다.

1. 베레모

제17조제1항 중 “있다”를 “있으며, 제작 양식은 별포 9와 같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소장”을 “법무부장관등”으로 한다.

제18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7호(종전의 제5호) 중 “법무부장관 또는 소장”을 “법무부장관등”으로 한다.

3. 사법경찰관의 직무 수행 및 행정조사 업무 시 필요할 때

4. 심리치료, 사회복귀 지원, 분류심사 등 업무의 특성상 사복을 착용하는 것이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

제19조제1항 중 “소장”을 “법무부장관등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착용수칙) ① <u>교도소·구치소 및 그 지소(이하 “교정시설”이라 한다)에서 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(이하 “교정공무원”이라 한다)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공무원의 제복(이하 “교정제복”이라 한다)을 착용하여야 한다.</u>	제2조(착용수칙) ① 「 <u>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</u> 」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<u>법무부장관 또는 교정시설의 장(이하 “소장”이라 한다)은 「교도관직무규칙」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도관의 구분과 담당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정공무원의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.</u>	③ <u>법무부장관, 지방교정청장, 교도소·구치소 그 지소의 장(이하 “법무부장관등”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제4조(교정모) 교정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, 제작 양식은 별표 1과 같다.	제4조(교정모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1. ~ 3. (생 략) 4. <u>팔각기동모</u> 제5조(교정복) 교정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, 제작 양식은 별표 2와 같다. 1. ~ 3. (생 략) 4. <u>기동복(겨울기동복, 여름기동복, 기동순찰점퍼, 기동순찰터틀넥셔츠, 기동순찰 여름용셔츠)</u> 5. · 6. (생 략)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제7조(견장) ① (생 략) ② 교정장견장 및 기동순찰견장은 계급장 대신 부착할 수 있으며, 부착 대상은 <u>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이</u> 정한다. 제9조(부속물) 부속물은 정복용 <u>셔츠 · 넥타이 · 넥타이핀 · 단추 · 벨트 · 장갑 · 이름표 및 방한 귀덮개</u>로 구분하고, 제작 양식은 별표 6과 같다. 제10조(교정제복의 착용기간) ①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베레모</u> 제5조(교정복)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기동복(겨울기동복, 여름기동복, 기동순찰 반팔 및 긴팔셔츠, 기동순찰 하의, 기동순찰점퍼)</u> 5. · 6. (현행과 같음) 7. <u>호송 근무복(여름용 상의, 겨울용 상의, 점퍼)</u> 8. <u>방한점퍼</u> 제7조(견장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<u>법무부장관등</u>-----. 제9조(부속물) ----- <u>셔츠 · 넥타이 · 넥타이핀 · 단추 · 벨트 · 장갑 · 이름표 · 방한 귀덮개 · 색안경 · 손전등 · 목덮개</u>-----. 제10조(교정제복의 착용기간) ① (현행과 같음)
--	---

② 제1항에 따른 여름철은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, 겨울철은 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9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소장은 기후, 근무장소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정제복의 착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제12조(예장) ① (생략)

② 예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착용할 수 있다.

1. 2. (생략)

3.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할 때

제13조(정장) ① (생략)

② 정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착용할 수 있다.

1. ~ 4. (생략)

5.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할 때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제14조(근무장) ① 근무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.

② -----

-----.

제12조(예장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 법무부장관등이 필
요하다고 인정-----

제13조(정장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----- 법무부장관등-----

제14조(근무장) ① -----
-----.

1. ~ 4. (생 략)

5. 근무화[활동성 근무화는 외
부의료시설 진료, 출정(出廷)
시의 계호(戒護) 등 소장이 필
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신는
다]

6. · 7. (생 략)

8. 넥타이(근무장)와 넥타이핀
(소장이 기후, 근무장소, 업무
상 특성 및 그 밖의 사유로 필
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착용
하지 아니할 수 있다)

9. (생 략)

② 근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
하나에 해당할 때에 착용한다.

1. (생 략)

2.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
할 때와 소장이 필요하다고
인정할 때

<신 설>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근무화

6. · 7. (현행과 같음)

8. 넥타이(근무장)와 넥타이핀

9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 법무부장관등-----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
1호의 경우 점검, 순시, 훈련,
출정, 주요행사 참가 등의 경우
를 제외하고는 착용하지 아니할
수 있으며, 제1항제8호의 경우
법무부장관등이 필요하다고 인
정할 때를 제외하고 착용하지

제15조(기동장) ① (생략)

② 기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착용한다. 다만,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도 근무장소 및 업무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정공무원에게 근무장 등 다른 교정제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.

1. 교정시설 밖에서 수용자 계호 등을 위한 근무를 할 때

2. ~ 5. (생략)

6. 그 밖에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제16조(기동순찰장) ① 기동순찰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.

1. 팔각기동모

2. ~ 5. (생략)

② (생략)

③ 소장은 수형자의 교정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, 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

아니할 수 있다.

제15조(기동장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.
--- 법무부장관등-----

--.

1. 교도소·구치소 및 그 지소(이하 “교정시설”이라 한다)의 -

2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-----
----- 법무부장관등-----

제16조(기동순찰장) ① -----

--.

1. 베레모

2. ~ 5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법무부장관등-----

할 때에는 기동순찰장의 차림새
를 변경할 수 있다.

제17조(수용자 처우 등을 위한 업무용 복장의 착용) ① 소장은 수용자의 보건·위생, 교도작업, 직업능력개발훈련, 교육·교화프로그램, 사회복귀 지원, 분류심사, 재활·심리치료 등 수용자의 처우, 수형자의 교정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정공무원에게 교정제복 외의 업무용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.

② 소장은 기후, 근무장소, 전투
· 사격훈련 및 그 밖의 사유로
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정
공무원에게 장화, 방한화, 방한
장갑, 색안경, 방탄 헬멧(군인의
것과 같다) 등 교정제복 외의
업무용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
있다.

제18조(사복의 착용) 교정공무원
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
해당할 때에는 교정제복 또는

제17조(수용자 처우 등을 위한 업무용 복장의 착용) ① -----

있으며, 제작 양식은 별포 9와 같다.

② 법무부장관등-----

제18조(사복의 착용) -----

제17조에 따른 업무용 복장이 아닌 복장(이하 “사복”이라 한다)을 착용할 수 있다. 1. 2. (생략)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 3. 4. (생략) 5. 그 밖에 <u>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이</u> 직무수행상 사복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9조(휴대품) ① <u>소장</u>은 교정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정시설 내 또는 교정시설 밖에서 계호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신분증, 출입증, 호루라기를 휴대하도록 할 수 있다. ② ③ (생략)	----- 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3. <u>사법경찰관의 직무 수행 및 행정조사 업무 시 필요할 때</u> 4. <u>심리치료, 사회복귀 지원, 분류심사 등 업무의 특성상 사복을 착용하는 것이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</u> 5. 6. (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) 7. ----- <u>법무부장관등</u>----- ----- 제19조(휴대품) ① <u>법무부장관등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③ (현행과 같음)
---	---